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6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병무담당 직원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94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 등	4
2. 병무청장의 전시임무교육 이수 현황 점검 등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대식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26.
3. 회부연월일 : 2024. 7.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임명된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시임무 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병무 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임.

이에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①지방병무청장이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안 제83조제7항), ②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안 제83조제7항), ③병무청장은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및 합동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구 (안 제83조제8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3조(전시특례) ① ~ ⑥ (생략) <u><신 설></u>	제83조(전시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은 제6항에 따른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⑧ 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른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u>
<u><신 설></u>	

현행	개정안
⑦ (생략) <신설>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⑩ 제6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이수시간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조치, 제8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 임명 제도’의 도입 취지는 전시 병무청 단독의 병력충원 업무가 제한될 경우 병력충원 업무 일부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하여 보다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동원 태세를 갖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평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은 전시 병무 행정 능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바, 이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지자체 전시 병무업무담당 직원 정원 현황]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합계
병무담당 직원	102명	2,280명	10,616명	12,998명

* 자료 : 병무청 ('24.1월 기준)

1.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 등

- ☐ 2023년 기준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병무담당 직원은 1,866명(전체 병무담당 직원의 약 14.5%)에 달하고, 연례적으로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인원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병무담당 직원 전시임무교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병무담당 직원 대상 전시임무교육 실시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6월
정원	12,788	12,812	12,876	12,881	12,998
이수	6,282	9,409	9,645	11,015	7,357
이수율	49.1	73.4	74.9	85.5	56.6

* 자료 : 병무청 ('24.6월 기준)

- ☐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활한 병무담당 직원 교육 이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전시임무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전시 등 유사시 병력 동원 등 병무 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평시에 전시임무교육을 통한 병무담당 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병무담당 직원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일과 시간 내 별도의 시간 할애 허용 등

교육 여건 조성이 필요하므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2. 병무청장의 전시임무교육 이수 현황 점검 등

- ☐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및 합동평가에 반영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지자체 정부업무평가 유형]

구 분	자체평가	합동평가
평가목적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평가함으로써 자율적인 평가·개선을 도모	국정 주요시책 등에 대한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함으로써 국정의 통합·효율·책임성 확보
평가대상	모든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시·군·구)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평가주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산하 합동평가단 * 행안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
평가결과 활용	차년도 성과관리계획, 예산·인사 등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공개,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급 등

· 자료 : 국방부

- ☐ 전시임무교육 이수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및 ‘합동평가’ 시 평가 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임무교육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그 결과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독려할 효과적인 유인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에서 유관기관 수요조사 등 일련의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지표를 심의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평가지표의 합동평가 반영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취지와 일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논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개별 법률에서 특정 교육에 대한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유사 입법례는 다수 확인되지만, ‘합동평가’ 반영 요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실적 평가 반영 요구만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참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및 합동평가 반영 요청 입법례]

법 률 명	평 가 대 상	자체평가	합동평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1조의2)	부패방지 교육 점검결과	○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점검결과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	○	×
장애인복지법(제25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점검결과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중소기업제품 및 상생협력생산제품 구매실적	○	×

· 자료 : 국방부

□ 국방부 및 병무청은 교육 이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반영하면 지자체의 전시임무교육 관심도 및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반면, 행정안전부는 개별법에서 ‘합동평가’ 실시를 규정하는 것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07